

자료표

내용: 2020년 3월 17일, 시의회에서는 COVID-19 (코로나19)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 하는 주거 및 상업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금지하는 city law(도시 법)을 채택하였습니다.

이유: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이 발생하였습니다. Gavin Newsom (개빈 뉴섬) 주지사는 일시적 재정 구제를 위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. 이 행정 명령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주거 및 상업 세입자에 해당 됩니다. 시의회에서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 도시 법을 채택하여 Buena Park (부에나 파크)에 적용하였고, 이 법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함입니다.

시일/기간: 도시 법은 2020년 3월 17일에 발효되었습니다. 주지사의 행정 명령 마감 기한인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. 주지사가 이 기한을 연장하면 도시 법은 시의회에서 종료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

적용 방식: 세입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으로 임대료를 지불 할 수 없는 경우, 집주인이나 임대주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집주인이나 임대주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late fee(연체료)나 페널티를 추가 할 수 없습니다.

임대료 면제가 아닙니다: 도시 법은 임대료 지불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, 주지사의 향후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도시 법이 만료될 시 세입자의 밀린 임대료 상환기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임대료를 계속 지불 할 수 있는 세입자는 지불하는 것을 권합니다.

세입자 자격: 해당 경우 가게 또는 사업 소득이 상당히 감소한 주거 세입자 (아파트 입주자 포함) 또는 상업 세입자: COVID-19(코로나19)에 인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COVID-19(코로나19)로 아프서 돌보는 경우; COVID-19(코로나19)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감소될 경우; 정부 또는 보건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"자가 격리" 또는 "자기 격리" 대상일 경우; 거액의 out-of-pocket medical expense (의료본인부담금)이 있을 경우; 또는 학교 폐쇄로 인해 아이를 돌볼 경우.



자료표

Utility(유틸리티): 도시 법은 세입자가 유틸리티 (가스, 전기, 인터넷, 케이블, 위성) 요금을 체납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. 세입자의 개별 상황이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요금이 임대료에 포함된다면, 도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경우 세입자는 개별 유틸리티 제공 업체에 문의 해야합니다. 수도세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다음을 지시하였습니다: (1)현 비상사태 기간 동안 모든 벌금이나 위약금 면제; (2) 최소 6 월 1 일까지 수도세 체납으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을 금지.

Southern California Edison(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)-1-800-655-4555

So Cal Gas(소 캘 가스)-1-800-427-2200

주택 소유자 대상 정보: Federally-backed mortgages (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) 외에도 200 개 이상의 은행과 신용 조합 (전국에서 최대 5 개 중 4 개 포함)은 COVID-19(코로나19)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90 일의 주택 압류 유예와 모기지 대출금 지불 연기를 발표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세입자-임대주 문제: 부에나 파크 임대주 또는 세입자로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Fair Housing Foundation에 전화 1-800-446-3247 또는 이메일 info@fhfca.org 로 문의하십시오. Fair Housing Foundation은 시의 주거 담당자이며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